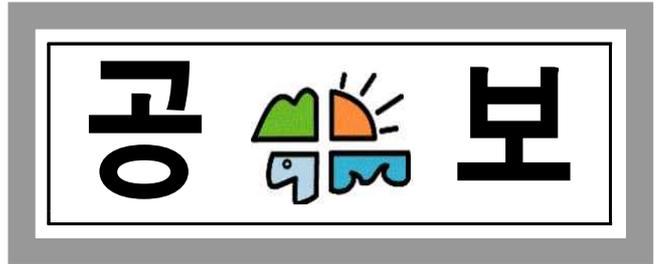


#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1341호 2021년 8월 13일(금)

## 고 시

- 속초 도시관리계획(도로: 대로3-4호선)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2

## 입법예고

- 속초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3
- 속초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예고 ..... 10
- 속초시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 예고 ..... 19

**속초시 고시 제2021-100호**

**속초 도시관리계획(도로: 대로3-4호선)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 영랑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구간에 대한 새로운 지적공부 반영을 위하여 같은 법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 속초 도시관리계획(도로: 대로3-4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속초시청 건설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8월 13일

속 초 시 장

가.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고시조서 : 아래조서 참조

나.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 실음생략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조서

가. 교통 시설

■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 결 정 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3	4	25~26.8	주간선 도로	5,160	교동 991도	장사동 517-1도	일반 도로	1976. 3. 27. (건설부고시 제37호)	지 적 재조사
변경	대로	3	4	25~26.8	주간선 도로	5,160	교동 9991도	장사동 517-1도	일반 도로	1976. 3. 27. (건설부고시 제37호)	

■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사유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대로3-4	대로3-4	◦ 지적변경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적재조사 완료구역 지적변경 사항 반영

속초시의회 공고 제2021-25호

「속초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조례안예고) 및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조례안 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9일

## 속 초 시 의 회 의 장 (관인생략)

### 속초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참조

2. 기 간 : 2021. 8. 9. ~ 2021. 8. 14.(6일간)

#### 3. 의견제출

가. 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속초시 기관·단체, 개인은 2021년 8월 14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의회 의장(대표발의 방원욱 의원, 속초시의회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 할 곳 : 24826/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의회

방원욱 의원(☎ 033-639-2048, FAX 033-631-9175)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lucky7chise@korea.kr),  
시의회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의견서 예시)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 명 :

제 출 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제출의견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기타 참고사항

○

# 속초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방원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일자 : 2021. 8. .

발 의 자 : 방원욱 의원 외 인

## 1. 제안이유

최근 코로나19 등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관광패턴에 변화가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재난 등 사회문제로 인한 지역관광 침체현상에 대처 방안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변화하는 관광환경에 대응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단체관광객의 범위를 시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2조)
- 나. 관광택시 사업 참여자의 범위 확대 (안 제4조)
- 다. 재난에 따른 기준 완화에 관한 내용을 추가 (별표)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 「관광진흥법」 제76조(재정지원)
- 나. 기 타
  - 1) 집행부 의견청취 :
  - 2) 조례안 예고 :
  - 3) 관계법령 발췌 : 붙임

## 속초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단체관광객”이란 내외국인으로서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정한 일정 인원 이상의 관광객을 말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외국인 전용 관광택시”를 “관광택시”로 한다.

별표에 다음 비고 사항을 추가한다.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에 따라 단체관광객 인원모집이 어려울 경우, 인원기준을 50% 완화하여 적용(재난종료 시까지 한시적 적용)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4. (생략)</p> <p>5. <u>“단체관광객”이란 20명 이상의 내·외국인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u></p> <p>6. ~ 9. (생략)</p> <p>제4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① <u>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u>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4. 속초시에서 추진하는 <u>외국인 전용 관광택시</u> 사업 참여자</p> <p>5.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단체관광객”이란 내외국인으로서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일정 인원 이상의 관광객을 말한다.</u></p> <p>6. ~ 9. (현행과 같음)</p> <p>제4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① <u>시장</u>-----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u>관광택시</u> -----</p> <p>5. (현행과 같음)</p>

[별표]

## 보상금 지급기준(제4조 제2항 관련)

### 1. 수학여행학교

인원기준	보 상 금	
	1박	2박 이상
학교당 20인 이상	1인당 5,000원	1인당 7,000원

### 2.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원기준	보 상 금
20인 이상 40인 이하인 경우	1숙박당 200,000원
41인 이상 80인 이하인 경우	1숙박당 400,000원
81인 이상인 경우	1숙박당 600,000원

#### ※ 비 고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에 따라 단체관광객 인원모집이 어려울 경우, 인원기준을 50% 완화하여 적용(재난종료 시까지 한시적 적용)

## 관계법령 발췌서

### □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③ 생략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5. 유휴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

제76조(재정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속초시의회 공고 제2021-26호

「속초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조례안예고) 및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조례안 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9일

## 속 초 시 의 회 의 장 (관인생략)

### 속초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참조

2. 기 간 : 2021. 8. 9. ~ 2021. 8. 14.(6일간)

#### 3. 의견제출

가. 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속초시 기관·단체, 개인은 2021년 8월 14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의회 의장(대표발의 이영순 의원, 속초시의회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 할 곳 : 24826/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의회

이영순 의원(☎ 033-639-2048, FAX 033-631-9175)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lucky7chise@korea.kr),  
시의회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의견서 예시)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소 :

○ 연락처 :

제출의견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기타 참고사항

○

# 속초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이영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일자 : 2021. 8. .

발 의 자 : 이영순 의원 외 인

## 1. 제안이유

행정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인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 나. 빅데이터 책임관의 지정 및 사무 (안 제7조)
- 다. 빅데이터 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제10조)
- 라. 빅데이터 기반구축, 수집·관리, 활용 (안 제11조 ~ 제13조)

##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 나. 기 타
  - 1) 집행부 의견청취
  - 2) 조례안 예고
  - 3) 관계법령 발췌 : 붙임

# 속초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빅데이터 기반구축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빅데이터”란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정형 또는 비정형(수치, 문자, 영상 등을 포함한다) 데이터의 집합과 이로부터 정보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더 큰 가치를 창출하는 기술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에 있어 빅데이터가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빅데이터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 안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누구든지 빅데이터를 편리하고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빅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로 하여금 국가안전보장 등의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에 따라 그 의무를 준수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속초시(직속기관·사업소·동을 포함한다)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하거나 출자·출연한 공사·공단, 법인 및 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빅데이터의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빅데이터책임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기 위해 빅데이터책임관을 둔다.

1. 빅데이터 시책 발굴 및 사업별 사전 협의·조정·지원 등 총괄 사무
2. 빅데이터의 수집·저장·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무
3. 빅데이터의 민간활용 촉진에 관한 사무
4. 빅데이터 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무
5. 빅데이터의 수집·저장·분석·활용 단계별 보안에 관한 사무

② 빅데이터책임관은 빅데이터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 국장으로 한다.

**제7조(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빅데이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빅데이터 활용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빅데이터 서비스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3. 빅데이터의 민간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빅데이터 활용 시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빅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6.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재정확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빅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빅데이터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8조(빅데이터활용위원회 설치)** 시장은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속초시빅데이터활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 변경
2.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분석 및 점검

### 3.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정책·제도 개선

#### 4. 그 밖에 빅데이터 활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빅데이터와 관련된 전문 분야를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속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전문가·교수 등 빅데이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빅데이터 기반 구축과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빅데이터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0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빅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시장은 빅데이터를 수집·활용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빅데이터의 수집·관리)** ① 빅데이터책임관이 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빅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의 데이터를 생성·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력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빅데이터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빅데이터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빅데이터책임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빅데이터를 총괄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13조(빅데이터의 활용)** 시장은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제·관광·교통·교육·의료·생활·복지 등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2. 빅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포럼, 세미나 및 공모전 개최
3. 빅데이터 활용의 성공사례 발굴·포상 및 홍보
4. 빅데이터 활용 교육
5. 그 밖에 빅데이터의 활용 인식 제고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업

**제14조(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① 시장은 공무원들의 데이터 역량 강화를 위하여 빅데이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빅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빅데이터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빅데이터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무를 빅데이터 전문 교육기관 또는 관련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평가 및 포상)**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관과 법인 등에 대하여 빅데이

터의 활용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빅데이터 활용 및 정책지원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기업·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속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비밀보호를 위한 조치)** ① 시장은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 보호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빅데이터의 활용 사무를 관련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 사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의 의무를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③ 빅데이터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는 빅데이터의 내용에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주기적으로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속초시의회 공고 제2021-27호

「속초시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조례안예고) 및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조례안 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2일

## 속초시의회의장(관인생략)

### 속초시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참조

2. 기 간 : 2021. 8. 12. ~ 2021. 8. 17.(6일간)

#### 3. 의견제출

가. 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속초시 기관·단체, 개인은 2021년 8월 17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의회 의장(대표발의 강정호 의원, 속초시의회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 할 곳 : 24826/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의회

강정호 의원(☎ 033-639-2048, FAX 033-631-9175)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lucky7chise@korea.kr),  
시의회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의견서 예시)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 명 :

제 출 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제출의견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기타 참고사항

○

# 속초시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

(강정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일자 : 2021. 8. .

발 의 자 : 강정호 의원 외 인

## 1. 제안이유

장래 시의 재정부담 요인이 될 수 있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여 행정의 책임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함

##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 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등 (안 제5조 ~ 제8조)
- 다.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의회 동의 등 (안 제9조)

##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 나. 기 타
  - 1) 집행부 의견청취
  - 2) 조례안 예고
  - 3) 관계법령 발췌 : 붙임

# 속초시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간투자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민간제안사업 또는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2. “사회기반시설”이란 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주무부서”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민간투자사업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사회기반시설을 확충·운영할 경우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속초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의2에 따른 대상사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9조에 따른 민간제안사업의 채택에 관한 사항
3.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법 제47조에 따른 공익을 위한 처분에 관한 사항
6. 법 제50조에 따른 대상사업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경제복지국장, 도시안전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속초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2. 민간투자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법률, 환경, 교통, 건설 등 해당 사업 관련 분야별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심의대상이 있는 경우에 주무부서에서 민간투자사업 별로 구성·운영하고, 해당 민간투자사업이 준공됨으로써 해산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무부서 소관업무 담당이 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시간, 안건 등을 통지하고 회의자료를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사업시행자·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의회의 동의 등)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은 제3자에 대한 제안공고 이전에 민간부문이 제안한 민간투자사업을,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은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그 기본계획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의 내용
2. 사업 타당성 조사내용
3.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4. 실시협약의 주요내용
5. 연도별 민간부문 지급내역 및 시설임대료 지급계획
6. 그 밖에 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2항 단서 규정의 경미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발췌서

###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사회기반시설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각부의 차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8명 이내의 민간투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기술적인 분야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민간투자사업자문위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주무관청의 장은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주무관청별 심의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와 주무관청별 심의위원회의 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4조(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이 동영

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심의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의결을 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 위촉위원과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34조의8제7항을 준용하고,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제34조의12를 준용한다.

⑧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장이 정한다.

⑨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주무관청별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⑩ 제9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주무관청별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무관청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주무관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